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24 발의연월일: 2020. 10. 6.

발 의 자:진선미・황운하・장철민

김영배 · 조오섭 · 송갑석

안호영 · 김민철 · 진성준

김원이 · 김윤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 국정 참여의 증대로 이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재검토, 정보공개 절차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다 강화하고, 정보공개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 화함(안 제4조).
- 나.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함(안 제6조).
- 다.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의 징계 정보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명시함(안 제7조).
- 라.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 9조).
- 마.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7조).
- 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 서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18조).

- 사.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 경함(안 제22조).
- 아.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 설).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공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청구, 공표 및 원문 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공공기관은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령"을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국외 정보
- 2.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顯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내 보안정

보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을 "국민과 외국인"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 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두고,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부서 에 적정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의 청구 및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라 제출 또는 진술할 의무가 없는 정보공개 청구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생활"을 "국민의 건강·안전 및 생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工事) 또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상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결과 등 행정감시"를 "결과, 감사 결과, 연구용역 결과 및 비위행위를한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 방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유·관리"를 "생산·접수·보유·관리"로, "쉽게"를 "쉽게 상시적으로"로, "정보목록"을 "정보명, 생산·접수 시기,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분류 및 보존기한 등이 포함된 정보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이를 분리하여 제외하거나편집하여 공개하되, 그 분리 및 편집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 중 "공개대상"을 "공개대상 및 부분 공개대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유·관리"를 "생산·접수·보유·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를 "법률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를 "국가안전보장·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구매 및 군사훈련 정보 등"으로, "중대한 이익"을 "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 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를 "정보로서"로, "그 직무수행"을 "증거·증언·변론 등의 실효성을 저해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으로 하 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본문 중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를 "사항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 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에"로, "사생활"을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범 위에서 벗어나거나 사생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 9호(종전의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특허 및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를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침해할 것으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사업활동"을 "법인등의 사업활동"으로. "건강을"을 "건강에 대한 피해

를 예방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의 경과 등"을 "기간의 경과 및 업무보고·국정 감사 등 국회활동을 통한 공개나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 또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국민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된 경우 등"으로 한 다.

- 3.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과 상호 신뢰하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정보 및 내부 검토 목적의 비공식정보 등 공개될 경우 통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 범죄의 예방, 진행 중인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예 산 지출에 관한 정보 등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관한 정보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을 "청구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성명·주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0일"을 "10일(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 중 "10일"을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정보가 제9조제1항제8호마목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개인은 전단에 따른 제3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제외한"을 "포함한"으로, "2분의 1"을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지명하거나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정보공개"를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정보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인이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 또는 진술한 공개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비공개"를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공개의 일시를 청구인과 협의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의일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를 "경우에는"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환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환한 정보를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시청 또는 청취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제13 조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예상되는 비용의 액수, 산출근거 및 결제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회"를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구"를 "청구로 인하여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시민단체"를 "공익 목적의 행정감시를 수행하는시민단체"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를 "사람 또는 해당 시민단체의 종사자로서 국무총리가"로 한다.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및 행정학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거나 연구하 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해당 분야의 박 사학위 취득자 중 4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무 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고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제6장(제29조 및 제3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정보 를 공개할 것을 지시한 사람
 - 2.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사람
 - 3.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회의 개최 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을 지시한 사람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 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킬 것을 지시한 사람
 - 2. 제13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공무원, 임직원인 위원의 사임·임기만료 등으로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같은 개 정규정에 따른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단서 중 "제5호"를 "제7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공
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	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
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는 모든 정보는 이 법에서 정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바에 따라 공개 청구, 공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표 및 원문 공개의 대상이 된
	<u>다.</u>
	② 공공기관은 생산·접수·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생 략)	제4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
	승)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	②
무에 관하여 <u>법령</u> 의 범위에서	<u>정</u> 보의 공개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 있다.	법 경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3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
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	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생략)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생 략)

<신 설>

- 1.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국외 정보
- 2.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대공(對共), 대정부전 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 한 국내 보안정보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국민과 외국인-----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현행 과 같음)
 -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 서를 두고, 기관 규모 등을 고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 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 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 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 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신 설>

<신 설>

려하여 그 부서에 적정한 인력
을 두어야 한다.
<u>③</u>
<u>정보통신망</u>
<u>.</u>
④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의 청구 및 정보의 공개에 필
요한 장소 및 시설을 갖추어야
<u>한다.</u>
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라 제출
또는 진술할 의무가 없는 정보
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신 설>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 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u>국민생활</u>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필요한 정보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
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
· 1. 국민의 건강·안전 및 생활
2. <u>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u>
(工事) 또는 사업 중 「국가
재정법」 또는 「지방재정
법」상 대규모 사업에 해당
하거나
3
결과, 감사 결과, 연구용역

결과 및 비위행위를 한 공무

4. (생략)

② (생 략)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 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 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 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 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 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원·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 방지-----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1) -----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 · 산·접수·보유·관리--------쉽게 상시적으로----정보 명<u>, 생산·접수 시기, 담당 부서</u> 및 담당자, 정보의 공개 또는 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 비공개의 분류 및 보존기한 등 이 포함된 정보목록-----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 를 분리하여 제외하거나 편집 하여 공개하되, 그 분리 및 편

집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삭 제>

서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	문
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	정	기
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u>	기
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	리
하는 정보 중 <u>공개대상</u> 으로	<u> </u>	분
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	공	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	망	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	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 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 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된 정보
 - 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		
	내상 및	부분
<u>공개대상</u>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u>생산·</u> 줕]수·보유	·관리
1 <u>법률에</u>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 2. 국가안전보장·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구매 및 <u>이익</u>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u>군사훈련 정보 등</u>-----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안전-----

<신 설>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u><신 설></u>

	<u>안전</u>
<u>3.</u>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으로서 외국과 상호 신뢰하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정보 및 내부 검토 목적의 비
	공식정보 등 공개될 경우 통
	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
	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현행 제3호와 같음)
<u>5.</u>	<u>정</u>
	<u>보로서</u>
	<u>증거·</u>
	증언·변론 등의 실효성을 저
	해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
6.	범죄의 예방, 진행 중인 수
	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
	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 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경우	ユ	직무	·수행	에	현저	한
	지장	을 줄	우	려가	있ા	구고	인
	<u>정할</u>	만한	상1	당한	0]-	유가	있
	<u>는 정</u>	보					
7.							
)	나항.	으로	서		
				<u><</u> 년	<u> </u>	<u>삭제</u>	<u>></u>
8.							
					「개	인정	보
	보호	拍	제2	조제]	[호 •	n II	른
	<u>개인</u> 2						
	개인기	정 부	처리	목기	덕의	범위	에
			1 1		1 1	Д,	, 1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마. <u>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u>

<u>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u>

<u>령</u>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
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u>사업활동</u>에 의하여 발생 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 람의 생명·신체 또는 <u>건강</u>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법령</u>
<u>.</u>
특허
및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
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영업비밀
<u>경제적 이익을 명백</u> <u>히 침해할 것으로</u>
가. <u>법인등의 사업활동</u>
<u>건강</u>
<u>11.0</u>

<u>을</u>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생 략) <신 설>

8. (생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제2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 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나. (현행과 같음)
다. 공공기관의 물품 및 서비
스의 구매계약 체결 및 이
에 따른 예산 지출 등 물
품 및 서비스 구매에 관한
<u>정보</u>
<u>10.</u>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u>기간의 경과 및 업무보고·국정</u>
감사 등 국회활동을 통한 공개
나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 또
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국
민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u>된 경우 등</u>
 ① (됬레기 기·○)
③ (현행과 같음) 10조(정보고개이 청구바버) ①
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u>청구인은</u>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 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2. (생략)
- ②・③ (생 략)
-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 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 구를 받은 날부터 <u>10일</u>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 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성명·주소
	1. 001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	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10이/고추이 0
	<u>10일(공휴일은</u>
	제외한다)
	②
	<u>/</u>
	일(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생략)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② 7 (생 략)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

(3
-	
-	
-	
_	<u>이 경우</u>
-	공개 대상 정보가 제9조제1항
2	제8호마목에 따른 개인에 관한
; -	정보인 경우에는 그 개인은 전
1	단에 따른 제3자에 포함하지
-	아니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	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포함한</u>
-	
-	
-	<u>2분의 1 이상</u> -
-	
-	
-	
-	<u><단서 삭제></u>

- 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u>제3항에</u>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 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 ⑥ (생략)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명하거나 위촉한 위원-
	· ⑤·⑥ (현행과 같음)
-11	
제	13조(<u>정보공개의 방법 및 정보</u>
	<u>공개</u> 여부 결정의 통지) ①
	<u>경</u>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인이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 또는 진술한 공개방
	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③ (현행과 같음)
	(4)
	<u>제</u> 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

제14조(부분 공개) (생 략)

<신 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저 (생 략)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 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 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세14조(부분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분리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
<u>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u>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할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공개의 일
시를 청구인과 협의하여 제13
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의
일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세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u>경우에는</u>
<u>공개하여야 한다</u> .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 저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단서 신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u>제1항</u>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변환하여야 할 정보의 양
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환한 정
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
개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공개할
<u>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세17조(비용 부담) ①
<u>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u>
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
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
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 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
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 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 시청 또는 청취의 방식으로 공
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시청 또는 청취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비
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시청 또는 청취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시청 또는 청취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시청 또는 청취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시청 또는 청취의 방식으로 공 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시청 또는 청취의 방식으로 공 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생 략)

-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 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u>개최하지 아</u> 니할 수 있다.
- 1. <u>심의회</u>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 2. 단순·반복적인 청구
- 3. (생략)

1 112 0 0 11 2
정의 통지 이전에 예상되는 비
용의 액수, 산출근거 및 결제방
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네1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
승)
②
심의회를 개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
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
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
2 <u>청구로 인하여</u>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
3. (현행과 같음)
,

우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 결

③ • ④ (생 략)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 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 다.

1. (생략)

<신 설>

<신 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	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
	1. ~ 4. (현행과 같음)
제	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
	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

- 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 교에서 법학 및 행정학 등 정 보공개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 치거나 연구하는 부교수 이상 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u>행</u> 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 람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 <u>부장관이</u> 위촉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취득자 중 4년 이상 관련 분
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무
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u>4.</u>
<u>국</u>
<u> 무총리가</u>
5. 공익 목적의 행정감시를 수
행하는 시민단체
<u>사람 또는 해당 시</u>
민단체의 종사자로서 국무총
리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거

<u>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정</u>

<신 설>

<u>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한 사</u>람

- 2.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사람
- 3.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 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회의 개최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을 지시한 사람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부 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정보공 개의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 거나 지연시킬 것을 지시한 사람
 - 2. 제13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 다.